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60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신장식・박은정・차규근

김준형・김재원・조 국

강경숙 · 김선민 · 황운하

이해민 · 서왕진 · 정춘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독립기관인 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등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다른 부처에 비해 소속 장관(위원장)의 인사 자율성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ख <u>े</u> ह	챙	개 정 안
제16조(사무처) ①	~ ③ (人	제16조(사무처) ① ~ ③ (현행과
략)		같음)
<u><신 설></u>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임
		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
		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